

• 본 내용은 최근 환경처가 발행한 '법령해석 질의 회신집'에서 발췌한 것임.

질 의 내 용	회 신 내 용
<p>•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외의 자의 설계·시공의 승인여부</p>	
<p>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승인을 얻고자 하는 바, 당사의 설계·시공 능력이 아닌 소각보일러 전문업자 또는 방지시설 업자의 설계·시공능력으로 승인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p> <p>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91.9.19)이전에 계약하여 설치 중인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관련조항을 적용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p>	<p>가. 폐기물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가 자가처리를 위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자기 스스로 설계·시공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귀사가 설계·시공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승인 신청을 할 수 없음</p> <p>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을 수 있음. 다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함</p>
<p>• 폐수처리장오니를 일반폐기물 매립지에 처리가능 여부</p>	
<p>가. 특정유해폐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폐수처리장오니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의거 경과조치기간 동안 일반폐기물매립 시설에 매립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p> <p>나. 종전법에 의한 일반산업폐기물을 종전법의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p>	<p>가. 폐수처리장오니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 12. 31까지 일반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 처리할 수 있음. 다만, 동매립시설은 종전법 제14조 또는 현행폐기물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을 말함.</p> <p>나.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규정은 제반사항을 종전법에 의하도록 한 것이므로 종전법에 의한 폐기물은 종전법에 의한 일반산업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거나, 현행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하여야 함.</p>
<p>• 소규모 소각로를 제작·판매 또는 설치할 경우 법적 규제여부</p>	
<p>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5kg 이하인 소각로를 제작·판매하고자 하는 데 폐기물관리법상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의 여부</p> <p>나. 사용자가 시간당 25kg 이하의 소각로를 구입설치할 경우 소각대상물질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상 규제여부</p> <p>다. 소각로 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 및 품질검사 기관은?</p>	<p>가.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의 제작은 소각능력에 관계없이 설계·시공에 해당되므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하여야 함. 다만, 소형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의 설계·시공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규정을 검토중에 있음.</p> <p>— 특정폐기물 소각시설을 제작·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특별한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됨.</p> <p>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소각능력에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얻어야 함.</p>
<p>• 철강슬래그의 성토·복토용으로로서 재활용가능 여부</p>	
<p>가. 철강회사에서 발생되는 철강슬래그를 성토용 및 복토용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재활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p>	<p>가.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분석결과 동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 규정된 특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철강슬래그를 성토 및 복토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부터 일반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며,</p> <p>나. 시·도지사는 이의 재이용시 지하수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타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활용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91.2.28 산업 31826-2984호로 시달한 "철강슬래그의 재생이용에 관한 지침"참조)</p>

질 의 내 용	회 신 내 용
<p>• 방계회사와 공동자가 처리시설 설치 가능여부</p> <p>— 소각물질이 동일한 방계회사(별도법인)와 특정폐기물 공동자가 처리시설(소각시설)의 설치가능여부</p>	<p>— 폐기물관리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시 공동처리대상 폐기물배출업체명, 처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함.</p>
<p>• 비닐, 스티로폴, 커피컵 등의 폐기물분류</p> <p>가. 생산활동에 수반하여 다량발생하는 포장재인 비닐, 스티로폴이 특정폐기물인지의 여부</p> <p>나. 작업장내 자동판매기에서 발생하는 라면 및 커피컵이 특정폐기물인지의 여부.</p> <p>다.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중공업지역내에서 사업자 스스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로(100kg미만/시간)를 설치코자 할 경우 설치승인 가능여부.</p>	<p>가. 질의“가” 및 “나”에 대하여 생산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비닐, 스티로폴 포장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로 분류되며, 작업장내의 자동판매기에서 발생하는 라면, 커피컵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됨.</p> <p>나. 질의 “다”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9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 시간당 소각능력 100kg미만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p>

•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질의 응답(환경처 소음·진동업무 편람 발췌)

질 의 내 용	회 신 내 용
1. 압연기, 도정시설 등에서의 기(機)와 시설의 차이점에 대한 정의는?	機라 함은 개별단위의 기기, 기구를 일컬으며, 시설이라 함은 동종 또는 이종의 여러개의 기기, 기구가 조합되어 일련의 제조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20마력 이상의 변속기에 각종 크레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변속기는 일종의 회전속도를 조절하는 기구이므로 변속기의 범위에 크레인이 포함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은 동력합계 20마력 이상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3. 소음배출시설에서 목재가공시설과 제재기의 구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대패기 및 목조 띠끌기계통은 어디에 포함되는지?	목재가공시설은 제재기계, 목공기계, 합판기계, 제지기계, 특수가공기계 등이 개별 또는 혼합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제재기는 목재가공기계의 일부로서 기계띠톱, 기계등근톱, 기계왕복톱, 기계체인톱으로 목재를 켜거나 절삭, 절단함으로써 목재를 제재하는 기계류를 말함. 따라서, 대패기(전기대패)는 목재가공시설에 해당되며, 목재가공 기계톱은 제재기에 해당됨.
4.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소음배출허용기준의 측정소음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단내 사업장이 도로를 경계로 국민학교 또는 종합병원지역, 주거지역이 인접하고 있을 때 동 사업장에 대한 평가소음도를 구할 경우 지역별 보정치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나?	공단단지내에 위치한 소음배출업소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동사업장의 부지경계선에서의 배출허용기준 산정을 위한 지역별 보정치는 0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5. 유압프레스도 소음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인지 여부?	유압프레스를 포함한 동력합계 10마력 이상의 프레스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의 소음배출시설로서 허가대상에 해당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에는 타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고 있음.
6. 진동배출시설의 동력합계는 기계·기구 1대의 동력합계인지 또는 2대이상 동일 기종의 동력을 합한 규모인지 여부?	진동배출시설로 규정된 시설 및 기계·기구류에 포함된 동력합계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2대이상 동일 기종의 동력을 합한 전체동력합계 규모기준은 아님
7. 부지경계선이 국도와 인접하여 외부차량 소음으로 배출시설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차량소음이 없는 부지경계선을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장의 배출소음도를 측정하기 위하여는 대상배출시설을 정상가동시킨 상태에서 소음도를 측정하여 암소음 등을 보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암소음은 대상배출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암소음 측정을 위한 측정장소 변경의 필요성은 없을 것임.

◎ 환경처고시 제1992-4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규제고시(환경처고시 제91-90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992년 6월 25일

환경처장관

연료사용규제고시중 개정

제2조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아파트”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연립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6조 중 “시·도지사 또는 관할 지방환경청장”을 “관할 시·도지사”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3호 및 제2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11조 제2호 중 “고양군”을 “고양시”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업무용 열공급시설에 한한다).

제14조 제4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16조 제1항중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확정된 경우”를 “지역난방공급계획을 확정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폐기물 소각장의 폐열 등으로써 지역난방공급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한 경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열공급시설(청정연료 사용대상시설)”을 “열공급 시설(청정연료 사용대상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한 열공급시설(청정연료 사용대상시설)”로 한다.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2]중 대상지역란에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 지역	황 함 유 율	시 행 시 기
· 강원도 : 춘천시, 원주시 · 충 북 : 충주시, 제천시	· B-C유 : 1.6% · 경유 : 0.4%	1993년 1월 1일 부터
· 강원도 : 춘천시, 원주시 · 충 북 : 충주시, 제천시	· 경유 : 0.2%	

[별표 5]중 대상지역란에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 상 지 역	열공급시설 용량의 합	사 용 연 료	시행시기
·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 30킬로칼로리 이상	· 청정연료(LNG, LPG) 또는 경유	· '93년 9. 1.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6조,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 환경처고시 제1992-42호

환경출장소의 기능·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1992년 7월 3일

환경처장관

환경출장소의 기능·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규정

제1조(목 적)이 규정은 환경처와 그 소속기관직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할 환경출장소의 기능·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 능)환경출장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오염방지기술 지원
2.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3.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이행여부 확인
4. 환경관련영업의 지도·점검
5. 환경오염원의 조사
6. 환경오염측정망의 운영·관리
7. 긴급오염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8. 환경오염물질 시험·분석
9. 환경보전 홍보·교육
10. 각종공해 신고 접수 및 민원안내
11. 기타 지방환경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위치 및 관할구역) 환경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합니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환경처고시 제90-1호('90. 1. 11.)는 이를 폐지합니다.

환경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지방환경청 춘천환경출장소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및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춘천군·홍천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및 철원군(1시, 9군)
부산지방환경청 부산동부환경출장소	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 경상남도 울산시·울산군 및 양산군(1직할시, 1시, 2군)
광주지방환경청 전주환경출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이리시·군산시·정주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옥구군·익산군·정읍군·남원군·김제군·임실군 및 부안군(6시, 8군)
광주지방환경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도 제주시	제주도
대전지방환경청 청주환경출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군·진천군·옥천군·보은군 및 영동군(1시, 5군)

◎ 대통령령 제13,699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령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의 범위)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에 관한 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등이 시행하는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된다.

② 제1항의 중기계획은 연도별로 사업지역·사업물량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중기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직할시·도별, 영향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절차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연도별시행계획에 미달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추진실적에 그 사유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도환경관리인. 1992.8

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1항에서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등 기타 시설물”이라 함은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공장(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송유관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및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
3.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에 따라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위험물저장소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관련시설

②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이라 함은 제1항의 시설물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물중 별표1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결부지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⑤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의 부과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1. 특별시·직할시 및 시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관광휴양지역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담한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점유자가 개선부담금을 부담한다.

제6조(개선부담금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다만,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로서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기숙사
3.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4. 종교시설
5.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립학교의 교육용시설물 및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중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
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8.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청소년전용시설
9.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 의료시설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료 및 재활시설
12. 시설물의 일부가 분할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분할소유된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그 공관원을 포함한다) 및 국제기구(그 직원을 포함한다)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 다만, 외국정부(그 공관원을 포함한다)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로서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그 공관원을 포함한다)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소방·청소·오물제거·환자수송·헌혈·우편 및 전파관리의 용도에 제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3.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립학교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

4. 경우에 따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처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제7조(개선부담금의 경감) 별표 2에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중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등) ①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매반기별로 산정·부과하되,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③ 환경처장관이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개선부담금의 금액·납기·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개선부담금납부고지서를 납기 개시 5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④ 납부의무자는 개선부담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조정) ① 환경처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개선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계측기의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이 높게 도는 적게 부과된 경우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부과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납기·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 ① 제8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개선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징수비용의 교부) 환경처장관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연료 및 용수사용량의 산정방법)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량 및 용수사용량은 총리령이 정하는 계측기에 의하여 측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측기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연료 및 용수사용량의 관리기록부 등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거나 관리기록부 등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표 4에서 정하는 시설물용도별 표준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3조(연료사용량의 환산방법)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량은 실제로 사용한 연료의 양에 발표 5에서 정하는 해당 액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14조(단위당부과금액 및 대당기본부과금액)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부과금액 및 대당기본부과금액은 기준부과금액에 환경처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연료 및 용수사용량별로 누진요율을 적용하되, 사용량별 기준부과금액은 발표 6과 같고, 자동차는 반기별 8,100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에의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격변동 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15조(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의 오염유발계수는 발표 4와 같고, 연료계수·차종별 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및 차량계수는 발표 7과 같다.

제16조(2이상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산정방법) 동일 시설물내에서 2이상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료의 종류별로 연료사용량에 단위당부과금액과 연료계수 및 지역계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개선부담금을 산정한다. 다만, 동일 시설물안에서 연료사용량의 측정이 가능한 연료와 측정이 불가능한 연료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능한 연료의 사용량은 당해 시설물의 총표준연료사용량에서 측정이 가능한 연료의 실사용량을 빼서 산정한다.

제17조(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수질 오염유발계수의 적용방법) ①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로서 용도별 용수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와 표준용수사용량 및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오염유발계수를 오염유발계수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오염유발계수의 산정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타 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11조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2.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3. 환경오염현황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4.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5. 기타 환경처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19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사업실시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범위안에서 정한다.

1. 계획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 장비비
6. 사무관리비 기타 부대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있는 경우 그

이자를 포함하고, 당해 사업의 실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해 사업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하는 때에 얻어지는 총 수입금을 뺀다.

제20조(원인자의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총액)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서 방지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이하 "방지사업부담금"이라 한다)은 각 원인자의 당해 방지사업에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방지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할 경우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체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만을 원인이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부족재원의 충당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원인자별 비용부담액 결정기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원인이자가 부담하여야 할 방지사업비용부담금액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업활동이 당해 방지사업과 관계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그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원인이자가 부담하여야 할 방지사업부담금의 총액을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1.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오염물질처리비용
4. 사업의 종류
5. 자본금·종업원수·연간제품생산량 및 매출액을 감안한 사업규모

제22조(방지사업부담금 부과징수절차 등) 시행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부담금 금액·납부기간·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방지사업의 종류)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3. 오염하천정화를 위한 퇴적오니준설사업 및 오·우수분리 관거의 설치사업

4. 오염이 심한 연안해역의 퇴적오니준설사업. 다만, 항만의 개발준설사업 및 유지준설사업을 제외한다.
제24조(방지사업의 위탁시행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단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위탁요율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 시행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비용부담계획승인신청서에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용부담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지사업 총소요사업비
2. 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3.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4.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5.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 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시기
7. 기타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시행자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25조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부담금의 징수위탁) ① 환경관리공단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방지사업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담자의 성명·주소·부과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징수위탁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부담금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체없이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처 장관은 법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2.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조정
- ② 환경처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 ③ 지방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부과 등 적용시기)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19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제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부과기간분 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를 삭제한다.
2. 부칙 제3조 단서중 “및 동령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 ②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조 제1호중 “환경보전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으로 한다.

2. 제8조의2제2호중 “환경보전법 제43조”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부과대상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제4조 제2항 관련)

구분	용도	규모
1	가. 위락시설중 일반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 간이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음식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대중음식점	160㎡이상
2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실내수영장 나.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라.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240㎡이상
3	가.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나. 전시시설중 전시장, 동·식물원 다. 판매시설중 상점 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슈퍼마켓·일용품등의 소매점	270㎡이상
4	가. 운수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철도역사·공사시설·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나. 의료시설중 병원, 격리병원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라. 교육연구시설중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직업훈련소,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도서관	380㎡이상
5	가. 위락시설중 무도장·무도학원 및 노래연습장 나.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세탁소 라. 관광휴게시설중 휴게소	410㎡이상

비고 : 1. 시설물의 용도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2. 위표는 사업자별·용도별로 구분하여 규모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2] 개선부담금의 경감대상 법인·단체(제7조 관련)

1.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2. 문화예술킨흥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한 지방문화사업자 및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5.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6.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

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대한교원공제회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

7.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연합회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8.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9.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0.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진흥공단

11.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및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1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3.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1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16.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17.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18.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센터 및 한국전산원

19.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0.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료기관에 한한다)

21.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

2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

23.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갱생보

호법에 의한 갱생보호회

24. 한국체육과학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별표 4] 시설물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 (제12조 제2항 및 제15조 관련)

용도	수질오염 유발계수	표준사용량(반기)	
		연료사용량 (l/m^2)	용수사용량 ($톤/m^2$)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1.29	0.95	1.00
나. 일반목욕장	0.12	60.00	26.30
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0.34	2.00	2.76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대중음식점	0.55	8.25	5.76
나. 안마시술소	0.15	30.00	13.15
다.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0	2.10	0.70
라. 실내수영장	0.07	30.00	20.60
3. 의료시설	0.34	2.00	2.76
4. 교육연구시설			
가. 과학기술연구소	0.34	2.00	1.38
나. 교육원	0.67	2.00	1.38
다. 기타 교육연구시설	0.67	4.00	2.76
5. 운동시설			
가. 체육관	0.67	4.00	2.76
나. 실내수영장	0.07	30.00	20.60
6. 업무시설, 근린공공 시설, 방송·통신시설, 동물관련시설	1.00	2.10	0.70
7. 숙박시설	0.38	4.23	3.56
8.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소매시장	1.29	1.90	2.00
나. 상점	1.29	0.95	1.00
다. 해산물 도소매 공동판매장	0.65	1.90	2.00
9. 위락시설			
가. 일반유희음식점·무도유희음식점·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	0.55	8.25	5.76
나. 특수목욕장	0.20	60.00	26.30
10.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영화관 제외), 집회장	1.29	0.63	0.67
나. 공연장중 영화관	1.29	1.90	2.00
11. 전시시설	1.29	0.63	0.67
12. 운수시설			
가. 화물터미널	0.67	2.00	1.38
나. 기타 운수시설	0.67	4.00	2.76

[별표 3]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제8조 제1항 관련)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2월 16일부터 2월말일까지

용도	수질오염 유발계수	표준사용량(반기)	
		연료사용량 (ℓ/㎡)	용수사용량 (톤/㎡)
13. 관광휴게시설 가. 휴게소	0.85	6.60	2.00
나. 기타 관광휴게시설	0.85	2.20	0.67
1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묘지관련시설	0.85	2.20	0.67
15. 기타시설(비고2에서 정하는 용도는 제외한다)	0.85	2.10	0.70

비고 : 1. 시설물의 용도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2. 부과면제대상용도에 대한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가. 단독주택·공동주택·기숙사·노유자시설·청소년시설 : 숙박시설
나. 종교시설 : 관람집회시설중 집회장

[별표 5] 액체연료환산계수(제13조 관련)

연료종류	LNG (Sm ³)	LPG (kg)	경유 (ℓ)	중유 (ℓ)	무연탄 신탄(kg)	유연탄 (kg)
환산계수	1.14	0.76	1	1.08	0.49	0.72

비고 : 위 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연료는 위표 연료중 가장 유사한 연료의 액체연료환산계수를 적용한다.

[별표 6]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기준부과금액
(제14조 제2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경우

구분	액체환산연료사용량 (ℓ/반기)	기준부과금액 (원/ℓ)
1	1,000이하	13
2	1,000초과~ 2,000까지	15
3	2,000초과~ 4,000까지	16
4	4,000초과~ 6,000까지	18
5	6,000초과~ 10,000까지	20
6	10,000초과~ 20,000까지	22
7	20,000초과~100,000까지	24
8	100,000초과~600,000까지	27
9	600,000초과	29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구분	용수사용량 (톤/반기)	기준부과금액 (원/톤)
1	400이하	79
2	400초과~ 800까지	87
3	800초과~ 1,600까지	97
4	1,600초과~ 2,400까지	108
5	2,400초과~ 4,000까지	120

구분	용수사용량 (톤/반기)	기준부과금액 (원/톤)
6	4,000초과~ 8,000까지	132
7	8,000초과~ 40,000까지	145
8	40,000초과~240,000까지	160
9	240,000초과	176

[별표 7]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제15조 관련)

1. 연료계수

연료 종류	LNG, LPG	경유			중유			무연탄 신탄
		자유황 (0.2%이하)	자유황 (0.2%초과 0.4%이하)	고유황 (0.4%초과 1%이하)	자유황 (1%이하)	자유황 (1%초과 1.6%이하)	자유황 (1.6%초과 4%이하)	
연료 계수	0.16	0.67	1.00	1.40	1.62	2.08	3.67	3.67

비고 : 위 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연료는 위표 연료중 가장 유사한 연료의 액체연료환산계수를 적용한다.

2. 차종별 오염유발계수

엔진종배기량(cc)	오염유발계수
2,000이하	1.00
2,000초과~ 2,500이하	1.25
2,500초과~ 3,500이하	1.75
3,500초과~ 6,500이하	2.64
6,500초과~10,000이하	4.50
10,000초과	5.00

3. 지역계수

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지역별	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시지역
지역계수	1.53	1.00	0.97	0.79

비고 : 해당지역계수가 2이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높은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지역별	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시지역
지역계수	2.07	1.00	0.68	0.67

비고 : 해당지역계수가 2이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높은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다. 자동차

지역별	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시지역	기타지역
지역계수	1.53	1.00	0.97	0.79	0.04

비고 : 해당지역계수가 2이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높은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4. 차령계수

차령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0	1.02	1.04	1.06	1.08	1.10	1.12	1.14	1.16

◎ 환경처고시 제1992-44호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여부확인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환경처고시 제91-91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992년 7월 22일

환경처장관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정상운영여부 확인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고시중 개정 별표 2중 적산전력계란의 부착 및 설치요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폐수처리장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전력을 적산 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기존구좌에 의한 적산전력계와는 별도로 설치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검침시 별지 제1호서식에 사용량을 기입하고 확인인(또는 서명)을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합니다.

◎ 환경처공고 제1992-22호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묻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2년 7월25일

환경처장관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해양배출처리제도의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폐기물의 무분별한 해양배출을 억제토록 함과 동시 배출해역지정에 따른 민원인

의 비용절감과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이 종류를 일부조정 함.

• 현재 해양배출이 허용되고 있는 생물학적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유기성·수용성폐수처리오니 및 수저준설토사이다 그와 성분이 유사한 하수처리오니, 정수오니 등의 폐기물도 해양배출이 가능토록 허용

나. 폐기물배출해역지정시 민원인이 해역을 선정하여 폐기물해양배출조사·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국가가 조사·지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무분별한 해양배출을 억제하고, 배출해역지정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기함.

다. 폐기물배출해역에 대한 해양환경조사를 민원인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던 것을 국가가 시행토록 함.

라. 폐기물운반선등록자가 해양에 배출처리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폐기물의 대상을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에 한정하여 명문화함.

마.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 교부절차를 변경함.

• 폐기물발생자가 폐기물을 운반선등록자에게 위탁처리하기 위한 신고필증교부신청시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또는 대학부설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폐기물 시험성적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던 것을 신고필증교부기관인 지방환경청에서 이를 직접 조사·분석하여 해양배출가능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위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전·사후관리를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처장관(참조: 해양보전과장, 전화 서울 421-02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낭비하면 공해물질 회수하면 유용자원